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지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991 발의연월일: 2025. 2. 7.

발 의 자:조지연·엄태영·장동혁

박덕흠 • 이인선 • 권영진

최은석 · 최수진 · 강대식

김소희 · 김정재 · 박상웅

이성권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기후변화, 탄소중립, 자원순환, 수자원, 생태계 등 환경 관련 현안들이 다양해지고 문제의 양상 또한 복잡해지고 있음.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바현재 환경정책토론·현안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에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9조의2(한국환경한림원) ① 환경분야 학술연구의 효율적 추진과 석학(碩學)의 교류·활용을 위하여 한국환경한림원(이하 "환경한림원"이라 한다)을 둔다.

- ② 환경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.
- ③ 환경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환경분야 연구기반 조성 및 환경현안 대응에 필요한 조사·연구
- 2. 환경분야 학계, 산업계, 연구계, 정부기관 간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사업
- 3. 환경분야 정책자문 및 홍보
- 4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
-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⑤ 이 법에 따른 환경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- ⑥ 환경한림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한림원의 운영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제59조제9항을 위반하여 한국한경보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
 - 2. 제5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환경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한 자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국환경한림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(이하 "구법인"이라 한다)은 총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환경한림원(이하 "신법인"이라 한다)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·의무를 승계하도

록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「민법」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,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 업무, 권리·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
-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(公簿)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.
-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회원 및 임직원은 신법인의 회원 및임직원으로 보며,회원 및임직원의임기는 종전의임명일부터 기산한다.
- 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59조의2(한국환경한림원) ① 환경분야 학술연구의 효율적 추진과 석학(碩學)의 교류·활용을 위하여 한국환경한림원(이하 "환경한림원"이라 한다)을 둔다. ② 환경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. ③ 환경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사업을 수행한다. 1. 환경분야 연구기반 조성 및환경현안 대응에 필요한 조사·연구 2. 환경분야 학계,산업계,연구계,정부기관 간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3. 환경분야 정책자문 및 홍보 4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여 지정 또는 위탁하는사업

<u><신</u>_설>

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다.

- ⑤ 이 법에 따른 환경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한림원 또 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.
- ⑥ 환경한림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한림원 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제59조제9항을 위반하여 한 국한경보전원 또는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한 자
- 2. 제5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한국환경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
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
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